

2020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0원
- 징수결정액 : 458천원
- 실제수납액 : 458천원
- 결손처분액 : 0원
- 미수납액 : 0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00.0%(전년도 100.0%)임.

〈2020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 =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합 계	—	458	458	—	—	—	—	100.0
세외수입	—	458	458	—	—	—	—	100.0
임시적 세외수입	—	458	458	—	—	—	—	100.0
기타수입	—	458	458	—	—	—	—	100.0
그외수입	—	458	458	—	—	—	—	100.0

※ 결손처분액 = 불납결손액 + 시효결손액,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2. 세출결산

○ 예산액 : 598,973천원

○ 예산증감 : 0원

○ 예산현액 : 598,973천원

○ 지출액 : 533,089천원

○ 이월액 : 0원

○ 불용액 : 65,884천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1.0%(전년도 17.0%)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으로는 낙찰차액 6,154천원, 집행잔액 59,730천원임.

〈 2020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598,973	533,089	-	65,884	11.0
사업예산계	473,119	422,953	-	50,166	10.6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 참여 활성화	473,119	422,953	-	50,166	10.6
고충민원의 적극적 해소	31,200	23,047	-	8,153	26.1
고충민원 조사 처리	31,200	23,047	-	8,153	26.1
시민참여 활성화	349,209	315,530	-	33,679	9.6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41,600	22,398	-	19,202	46.2
공공사업 감시평가	79,000	74,318	-	4,682	5.9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참여 활성화 시스템 구축·운영	228,609	218,814	-	9,795	4.3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92,710	84,376	-	8,334	9.0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92,710	84,376	-	8,334	9.0
일반예산계	125,854	110,136	-	15,718	12.5
기본경비	125,854	110,136	-	15,718	12.5

- 가. 예산 이용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 전용 : 해당사항 없음.
- 다. 예산 이체 : 해당사항 없음.
- 라.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사항 없음.
-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사항 없음.
-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사항 없음.

3. 기금결산 : 해당사항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사항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2020년도 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 신규취득 등 1,357천원
- 매각·폐기 등 12,680천원
- 당해연도말 총 수량 4개, 현재액은 5,568천원임.

〈 2020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천원)

연 번	정부 물품 분류 번호	품명	단 위	정 수	내 용 연 수	구 분	2019 년 도 말 현재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현황								2020 년 도 말 보유액		
								취득					처분					
								구 매	관 리 전 환	양 여	기 타	소 계	매 각	관 리 전 환	양 여		기 타	소 계
합계				4		수량	12	1	-	-	-	1	-	9	-	-	9	4
합계				4		금액	16,891	1,357	-	-	-	1,357	-	12,680	-	-	12,680	5,568
1	4321 1503	노트북 컴퓨터	대	3	6	수량	10	1	-	-	-	1	-	8	-	-	8	3
						금액	13,634	1,357	-	-	-	1,357	-	11,744	-	-	11,744	3,247
2	4511 1616	비디오 프로젝 터	대	1	8	수량	1	-	-	-	-	-	-	-	-	-	-	1
						금액	2,321	-	-	-	-	-	-	-	-	-	-	2,321
3	4512 1516	디지털 캠코더	개	-	9	수량	1	-	-	-	-	-	1	-	-	1	-	
						금액	936	-	-	-	-	-	936	-	-	936	-	

II.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2020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100%이나 예산편성 없이 45만 8천원을 징수하였음.
(전년(512만 8천원) 대비 467만원 감소(1,120%))

〈2020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 액 (B)	수 납 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 =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합 계	-	458	458	-	-	-	-	100.0
세외수입	-	458	458	-	-	-	-	100.0
임시적 세외수입	-	458	458	-	-	-	-	100.0
기타수입	-	458	458	-	-	-	-	100.0
그외수입	-	458	458	-	-	-	-	100.0

가. 세입예산 편성 철저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중 “그외수입”의 발생은 위원회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35시간 근무) 2명에 대해 과다지급된 수당액(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의 반납조치에 따른 것임.

- 「서울특별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근무시간선택제¹⁾ 또는 집약근무제²⁾사용 시 대체휴무 등의 경우는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변경하고, 연가의 경우는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변경하거나 실제 근무시간만큼 연가를 사용해야 하나,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으로, 향후 사무 처리에 있어서 제반 규정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위한 적절한 업무 처리는 물론, 부당 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정액급식비 지급기준〉

□ 휴가

- (대체휴무 등) 사용일의 근무시간을 8시간* 으로 변경 후 사용
 -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요일별 근무시간 또는 주당 일평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이하 8시간* 기준에 대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
 - (연가) 사용일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하거나 실제 근무시간만큼 연가에서 공제
 - * 반일연가(오전.오후)도 시간단위로 사용
 -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일+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만큼 연가시간 등록
 -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일 근무시간만큼 연가시간 등록
- 10시간 근무일에 연가 사용 시 = (1일+2시간) 연가등록
 - 6시간 근무일에 연가 사용 시 = 6시간 연가 등록

※ 「2021 서울특별시 유연근무운영지침」 참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정액급식비 지급기준〉

라) 정액급식비

$$\text{지급액} = 140,000\text{원}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출근근무일수}}{\text{「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출근근무일수}}$$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출근근무일수"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주당 근무일수를 말하며, 주당 근무일수가 계약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일수를 말함.



- 예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정액급식비 지급액은?
☞ 112,00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140,000원 × (4일/5일)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수당 등 지급' 내용 참조

1) 근무시간선택제 : 주35시간 5일 근무를 준수하되, 1일 4~12시간 근무
2) 집약근무제 : 주35시간 4일 동안 근무하며, 1일 4~12시간 근무

○ 또한 본 세입의 발생 및 부족 징수로 ‘그외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이 예산편성 없이 세입조치 되는 등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없는 세입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바,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예산편성 일반지침’에 따라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3년간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없이 수납 발생 내역 >

(단위 : 원)

예산과목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그 외수입 (224-06)	2020	-	457,940	457,940	-
그외수입 (224-06)	2019	-	5,128,190	5,128,190	-
기타이자수입 (216-06)	2018	-	60,200	60,200	-
시·도비반환금수입 (224-04)	2018	-	154,000	154,000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24 임시적세외수입	
	224 기타수입	
	224-06 그외수입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4. 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지원계정)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24 임시적세외수입	
	225 지난연도수입	
	225-01 지난연도 수입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2. 세출결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20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598,973천원) 대비 89.0%(533,088천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11.0%(65,884만원)로 전년도(17.0%) 대비 6.0% 감소하였으나,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1.6%)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2020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598,973	533,089	—	65,884	11.0
사업예산계	473,119	422,953	—	50,166	10.6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 참여 활성화	473,119	422,953	—	50,166	10.6
고충민원의 적극적 해소	31,200	23,047	—	8,153	26.1
고충민원 조사 처리	31,200	23,047	—	8,153	26.1
시민참여 활성화	349,209	315,530	—	33,679	9.6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41,600	22,398	—	19,202	46.2
공공사업 감시평가	79,000	74,318	—	4,682	5.9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참여 활성화 시스템 구축·운영	228,609	218,814	—	9,795	4.3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92,710	84,376	—	8,334	9.0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92,710	84,376	—	8,334	9.0
일반예산계	125,854	110,136	—	15,718	12.5
기본경비	125,854	110,136	—	15,718	12.5

가. “고충민원 적극적 해소” 사업관련

-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사업은 민원조정·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의 권리구제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민원배심법정 운영’,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31,200천원) 대비 불용률은 26.1%(8,153만원)이며, 이중 ‘사무관리비(예산현액 13,200천원)’의 불용률은 55.4%(7,309천원)에 달하는 등 불용률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음.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산출기초)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31,200	23,047	8,152	26.1
고충민원 조사처리	사무관리비	합계	13,200	5,891	7,309	55.4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2,500	-	2,500	100
		민원배심제 운영	10,700	5,891	4,809	44.9
		찾아가는 고충민원 서비스 운영	-	-	-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합계	18,000	17,156	843	4.69

- 산출기초 내용 중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은 예산편성(2,500천원) 후 전액불용(100%) 처리하였고, ‘민원배심제 운영’은 44.9%(4,809천원)를 불용 처리하는 등 면밀한 산출기초 분석 없는 관행적 예산편성으로 매년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바, 예산의 비계획적인 편성과 운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위원회의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은 최근 3년간 같은 규모(2,500천원)로 편성하여 2018년 76.2%, 2019년 △28.4%, 2020년 100%로 코로나19의 특수상황과는 별개로 불용과 초과집행이 남용되고 있음.

- 예산집행내역 일부는 당초 계획 대비 면밀한 산출기초 없이 관행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해 불용이 발생되었다고 보여 지는바, 재정의 비계획적 운용에 따른 비예측성을 수반하는 예산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감사위원회의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민원인과 처리기관간 의견을 달리하는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등에 대해 활용되는 ‘민원배심제’는 개최 실적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관련예산은 전년도(17,600천원) 대비 축소된 규모임에도 불용률은 오히려 증가 (2019년 32.1% → 2020년 44.9%)하였음.

〈최근 3년간 “고충민원 조사처리” 예산 집행실적〉

(단위: 천원)

연도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2020	고충민원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10,700	5,891	4,809	44.9%
	민원배심제 운영	10,700	5,891	4,809	44.9%
	찾아가는 고충민원 서비스 운영	-	-	-	-
2019	고충민원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17,600	11,957	5,643	32.1%
	민원배심제 운영	17,600	11,957	5,643	32.1%
	찾아가는 고충민원 서비스 운영	3,000	1,150	1,850	61.7
2018	고충민원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17,600	12,513	5,087	28.9%
	민원배심제 운영	17,600	12,513	5,087	28.9%
	찾아가는 고충민원 서비스 운영	3,000	300	2,700	90

- 시민감사위원회는 면밀한 예산편성과 함께 고충민원 담당자 교육활성화 및 대시민홍보 등 민원배심제 활성화를 통한 개최확대와 제도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관련

○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 감사·조사에 외부전문가, 시민 등의 참여로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심의회 운영 및 외부 전문가 강사 참여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41,600천원) 대비 불용률은 46.2%(19,202천원)이고, 이중 ‘사무관리비’ 예산현액(25,600천원)의 불용률은 71.4%에 달하는 등 매년 30%를 초과하는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시민감사 및 주민활동지원”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41,600	22,398	19,202	46.2
시민감사 및 주민활동지원	사무관리비	합계	25,600	7,309	18,290	71.4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11,100	4,710	6,390	57.6
		감사·조사 등 외부 전문가 감사참여	7,500	2,600	4,900	65.3
		주민감사 20주년 토론회	7,000	-	7,000	1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합계	16,000	15,089	912	5.7
		시민·주민감사 업무수행	16,000	15,089	912	5.7

○ ‘감사청구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³⁾」에 근거하여 주민감사 청구사항 발생 시 개최되며, 매년 개최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감사청구 심의회 운영 예산 불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감사청구심의회 개최 실적의 감소에 병행하여 시민감사·주민감사 개최 실적 또한 감소함으로써 외부 전문가의 참석수당 등도 지속적으로 불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감사청구심의회 개최 실적 : 2018년 5회, 2019년 3회, 2020년 2건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감사청구심의회) ⑤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2. 주민 감사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럼에도 위원회의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에 따라 매년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을 적기 적소에 투입할 수 없게 하는 예산의 비효율적 예산운영의 원인이라고 할 것인바, 적절한 예산편성 및 실적 제고를 위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

(단위:천원)

회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사무 관리비	16,100	9,804	6,296	39.1%	16,100	6,728	9,372	58.2%	25,600	7,309	18,290	71.4%

- ‘감사·조사 등 외부 전문가 감사참여’는 외부 전문가 대신 시민감사옴부즈만 자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발생(불용률 46.2%)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취지와 상반된다고 하겠음.
- 이는 예산편성시 시민감사의 외부 전문가의 시정참여에 대한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 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 참여옴부즈만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인력풀 구성의 확대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와 예산 편성 시 사업 목적이 유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사업 관련

-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사업은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여부를 감시·평가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79,000천원) 대비 불용률은 5.9%(10,966천원)로 집행 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나 이중 ‘사무관리비’의 세부항목별 집행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배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 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79,000	74,318	4,682	5.9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사무관리비	합계	67,000	63,089	3,911	5.8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	42,000	49,950	-7,950	-18.9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	21,000	13,100	7,900	37.6
		시민참여옴부즈만 워크숍	4,000	39	3,961	99.0
	시책추진사업추진비	합계	12,000	11,230	770	6.4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업무 추진	12,000	11,230	770	6.4

- ‘사무관리비’ 중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은 편성한 예산(4천 2백만원)보다 795만원을 초과 지출하였으며, ‘공공사업 감사활동 평가 토론회’는 편성한 예산의 37.6%(790만원)를 불용처리 하였으며, ‘시민참여옴부즈만 워크숍’은 예산 대비 99.0%(8,940천원)를 불용 처리하였음.

○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의 세부항목별 초과집행과 변경이 반복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는 당초 예산 편성과 달리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을 위한 예비비의 성격으로 집행한 것으로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반복되는 변경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다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2호4)에 위배와 함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배한 예산 집행 행태가 된다고

4)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산출 기초에 의한 편성과 집행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지속적인 “기본경비” 불용사업 과다

-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 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운영경비로 이중 ‘기본사무종이류’(불용률 -229.5%)와 ‘민원 조사활동지원’
(불용률 -436.5%) 사업비는 초과 집행하였고, ‘행정장비수리비’(예산현액 1,512천원)와
‘도서구입비’(예산현액 250천원)는 예산현액 전부를 불용처리 하였으며,
‘국내여비’는 62.0%(예산현액 25,320천원)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음.

〈“기본경비”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125,854	110,136	15,718	12.5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합계	91,894	91,873	21	0.0
		기본사무종이류	662	2,181	-1,519	-229.5
		소규모수선비	175	33	142	81.1
		행정장비수리비	1,512	-	1,512	100.0
		도서구입비	250	-	250	100.0
		주요업무추진급량비	50,400	33,019	17,381	34.5
		인쇄비 및 유인물제작비	32,295	21,229	11,066	34.3
		민원 조사활동 지원	6,600	35,411	-28,811	-436.5
	국내여비	합계	25,320	9,624	15,696	62.0
		여비(관내, 관외)	25,320	96,24	15,696	62.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합계	3,300	3,300	-	0.0
		사업소장(4급 상당)	3,300	3,300	-	0.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합계	5,340	5,339	1	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340	5,339	1	0.0

- 사업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산출기초별 집행 현황을 보면,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중 ‘기본사무 종이류’의 경우 편성된 예산액(66만 2천원) 대비 229.5%(151만 9천원)를 집행하였으며, ‘민원조사활동지원’의 경우는 당초예산(660만원) 대비 436.5%(3천5백만원)를 집행하는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자의적 예산 집행 행태를 보이고 있음.
- ‘국내여비’는 매년 40% 내외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을 적기 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비효율적 예산운영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것인바, 위원회에서는 매년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출장 수요에 대한 통계적 분석 활용을 통한 적정 예산편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편성된 예산 보다 과다 집행되는 위원회의 회계질서 문란 행태가 매년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바,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예산의 20%이상 불용사업 관련

- 2020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5억9천8백만원) 대비 불용률은 11.0% 수준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규모(1.6%) 보다 상당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 특히,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사무관리비)”,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사무관리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국외업무여비)” 등 총3개 사업의 경우는 불용률이 20%를 초과하고 있음.
- 과도한 불용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의 대소를 떠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 바, 전년도 지출 실적을 감안한 사업계획 수립과 감액조정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20회계연도 2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 및 불용사유〉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고충민원 조사 처리 (사무관리비)	13,200,000	5,891,000	7,309,000	55.4%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민원배심 개최건수 감소, 고충 민원 담당자 역량강화교육미실시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사무관리비)	25,600,000	7,309,510	18,290,490	71.4%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감사청 구심의회 개최건수 감소, 주민 감사 20주년 토론회미실시
기본경비(국내여비)	25,320,000	9,624,300	15,695,700	62.0%	관내 고충민원, 시민·주민감사, 공공사업만을 조사·감사·감시 하는 위원회 업무 특성상 관외 출장이 많지 않고, 특히 고충 민원의 경우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서면조사 및 응답소시 스템을 통한 회신이 주된 방식 이며, 이에 국내여비 집행이 부진하였음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 법 조 사 관	김 고 은